

서울고등법원 2022. 5. 4 선고 2021나20239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5. 4 선고 2021나20239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19가합5323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법무법인(유한) B

2.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송하섭

피고, 피항소인 1. D

2. E

3.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정재하

4. G

5. H

피고 1, 2, 4,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안성길

변론 종결 2022. 4. 13.

판결 선고 2022. 5. 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19가합53236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D과 I 사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8. 5. 2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I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J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가. 피고 E과 I 사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8. 5. 2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I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J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가. 피고 F과 I 사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13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8. 5. 1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은 I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J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5. 가. 피고 G과 I 사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8. 5. 1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G은 I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J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6. 가. 피고 H와 I 사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H는 I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J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7.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I의 아버지로 치매, 양극성 장애 등으로 2014. 8. 5. 성년후견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8. 10. 원고 A의 성년후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B과 K회계법인이 변경, 선임되었다. 법무법인(유한) B은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9. 5. 8. 이를 허가하였다.

나. 원고 A은 2018. 5.경 및 현재 아들인 위 I에 대하여 아래 내역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1	2014. 7. 2.	27,004,929,604	I의 L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위해 담보제공된 원고 A의 예금에 대하여 L은행이 질권을 실행하여 I의 대출원리금 채무에 변제충당
2	2018. 12. 11.	8,313,040,645	원고 A 소유 부동산(M건물 N, O, P동)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I의 L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대위변제
3	2019. 5. 2.	27,877,663,014	원고 A 소유 부동산(Q빌딩)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I의 L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대위변제
9,635,136,986	원고 A 소유 부동산(R빌딩)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I의 L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대위변제		
합계	72,830,770,249		

다.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I이 그 일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I과 소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2018. 12. 31. 기준 I에 대하여 26,319,372,048원(2018. 1. 1. 기준 25,764,372,048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8. 5.경 I과 사이에, I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각 일부(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를 피고들에 대한 I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D	2018. 5. 23.	10억 원	갑 제7호증의 1, 2
E	2018. 5. 23.	3억 원	갑 제8호증의 1, 2
F	2018. 5. 10.	13억 원	갑 제9호증의 1, 2
G	2018. 5. 11.	6억 원	갑 제10호증의 1, 2
H	2018. 5. 16.	6억 원	갑 제11호증의 1, 2

마.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2018. 5.경 I이 보유한 적극재산 내역 중 부동산 부분의 총 가액은 7,720,216,585원이고[I은 이 밖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J에 대한 대여금 채권,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등에 대한 주식을 아울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I의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T은행	200,828,492	갑 제28호증
U은행	3,537,706,658		
L은행	57,339,590,382		
중부세무서	52,635,090		
강남세무서	488,208,130		
평창군	256,060		
V(원금)	2,764,749,908		
V(지연손해금)	2,273,911,893		
합계	66,657,886,613		
2	S	41,827,606,549	갑 제15호증(원금 및 이자 기준)
3	원고 A	27,004,929,604	갑 제27호증(원금 기준)
4	W은행	6,500,000,000	갑 제54호증
5	C	25,764,372,048	갑 제12호증
총 합계	167,754,794,81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5, 27, 28, 54호증, 을마 제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가의 1)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들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I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I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I이 무자력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I과 통모한 바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34, 36 내지 38호증, 을다 제3호증, 을마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가의 2)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이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I과 다른 가족 사이의 재산 관련 분쟁 발생 사실, I이 부친의 재산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기소된 사실, I이 원고 A의 성년후견인을 고소하는 등 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실 등 I의 재산현황이나 자력상황에 대하여 의심의 단초를 제공하는 언론기사 등이 다수 공표되었다. 피고들은 I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채권자들로서 I이 원고 A의 아들로써 S의 대표이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I에 관한 위와 같은 언론 기사를 주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I과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들은 I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은 I으로부터 현금이 아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받았다.

② I이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개인 채권자들인 피고들은 3억 내지 13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채권을 2018. 5.경 양도받았다. I이 이 사건 각 채권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약 77억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은 다수의 가압류가 경로되어 있어 환가가능성이 낮은 반면 이 사건 각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적극재산이다.

③ I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일은 2018. 6. 8.이다. 그럼에도 피고 D은 I으로부터 변제일 이전인 2018. 5. 23.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행위이다.

④ 피고 F은 I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여 2014. 11. 12. 피고 F과 I 사이에 "I이 S과 연대하여 F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I은 2014. 12. 17.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

8%라는 고율의 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인 2018. 5.까지 12억 9,650만 원이 변제되었으나 그 중 8억 원 가량이 이자에 충당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 F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I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게다가 I은 연대채무자인 S이 있었음에도 피고 F에게 J에 대한 채권 13억 원을 변제조로 양도하였다.

⑤ I이 지분을 갖고 있던 X CC의 골프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4년부터 경매가 진행되어 2018년 주식회사 Y가 이를 낙찰받았는데, 피고 G은 위 회사의 회장이었다. 피고 G은 I이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채무를 수년간 변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⑥ 피고 H의 I에 대한 4억 3,000만 원의 2017. 4. 24.자 공정증서 채무는 주채무자가 S이고, I은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 I은 2017. 9. 5. S에서 퇴임하여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있었던 2018. 5.에는 S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또한 위 채무는 위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보증채무임에도 I은 피고 H에게 J에 대한 채권 6억 원을 양도하였다. 피고 H로서도 이러한 변제 경위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홍지영

판사박선영

판사김용하

1) 원고는 당심에서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철회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사해행위 주장에 관해서만 판단한다.